

##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6-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4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### □ 개정이유

- 「지방세 특례 제한법」에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,
-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,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공제 (안 제15조의2)
- 나. 조례로 감면사항을 정할 수 없는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규정한 근거 조항을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변경 (안 제17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###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

에 따라 「동두천시 시세 기본조례」 제4조에서 정한 시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300원

제17조 중 “제13조제3항”을 “제13조제5항”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세무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무과장 주성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시세담당 정우상 (☎860-2202)

